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1095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최○○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2021. 6. 11.자 담배소비세 591,162,150원, 지방교육세 228,606,980원 부과처분 및 2021. 7. 13.자 담배소비세 19,955,205,980원, 지방교육세 7,628,211,8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자가 2021. 6. 11.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고지내역서에 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같은 날인 2021. 8. 2.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 6. 11.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1. 6. 11. 및 2021. 7. 13.'은 '2021. 6. 11.'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 표시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식회사 E를 통해 ○○ 소재 F(이하 '이 사건 1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이하 '이 사건 1니코틴'이라고 한다)을, ②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회사 E를 통해 ○○ 소재 G(이하 '이 사건 2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니코틴(이하 '이 사건 2니코틴'이라고 한다)을, ③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주식회사 H을 통하여,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접, ○○ 소재 I(이하 '이 사건 3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니코틴(이하 '이 사건 3니코틴'이라고 한다)을 각 수입하고, 이를 향료 등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액상담배용액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으로, 이 사건 2, 3니코틴은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세관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장은 2019. 7. 16.부터 2020. 5. 29.까지 D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6. 1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0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의 담배소비세 합계 20,546,368,130원, 같은 기간의 지방교육세 합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7,856,818,860원, 총합 28,403,186,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성니코틴(이 사건 1니코틴) 또는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사건 2, 3니코틴)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이고,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여기서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①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제조한 합성니코틴, ②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 즉 줄기나 뿌리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666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1니코틴의 품명은 '합성니코틴(Nicotine Synthetic)'이고 그 품번은 14-27950이며, CAS번호[2]는 54-11-5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② 현재 이 사건 1거래처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1니코틴과 같은 품번의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1니코틴의 CAS번호인 54-11-5는 천연니코틴 혹은 합성니코틴 중 S-니코틴의 CAS 등록번호에 해당한다.

④ 합성니코틴의 경우 천연니코틴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가격은 현재 기준 1kg당 약 1,083 내지 4,820달러 정도로 보인다.

⑤ 원고는 주식회사 E를 통해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1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1거래처 측에서는 주식회사 E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합성니코틴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1거래처는 현재 이 사건 1니코틴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1거래처는 원고 측과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거래처가 201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1니코틴을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1니코틴의

2) J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라고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가격은 1kg당 197~208달러 가량으로, 앞서 본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현재 가격과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있다. S-니코틴의 가격은 오히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가격과 유사하다.

(3) 니코틴은 그 농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원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도 순도(assay) 란에 '최소 99.0%'(갑 제4호증의 1) 또는 '99.8%'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4호증의 4), 원액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2016년경 수입된 이 사건 1니코틴이 니코틴 원액인지 희석된 것인지는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는 이를 직접 판매한 자로서 이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1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1거래처와 연락을 취하여 거래여부나 이 사건 1니코틴 취급여부, 이 사건 1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는 점에 관한 인증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고, 다만 거래 당시인 2016년경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2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2거래처는 그 소재지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 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자본금의 규모가 약 1,600,000원에 불과하며, 회사 홈페이지 등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영업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거주자로서 ○○ ○○○에 거주하고 있다.

② 아래 4)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초에서 니코틴을 추출함에 있어 잎에서 이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을 제외한 줄기, 뿌리는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잎에 비해 그 함량이 현저히 적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거래처가 회사로서 실체를 갖춘 이 사건 2니코틴의 수출업체인지 의문이 있다.

(2) 아래 4)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거나 낮아 보인다.

(3) 이 사건 2니코틴이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면, 그 가격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에 비해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2니코틴의 가격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의 일반적 가격과 유사하다.

(4) 2017년경 수입된 이 사건 2니코틴의 거래 관련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2니코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4) 이 사건 3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3거래처가 있는 ○○에서는 담배전매제도를 시행하여 ○○ 정부로부터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초의 잎을 취급하여 니코틴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 사건 3거래처는 위와 같은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은 바 없다.

② ○○ ○○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3거래처는 식물추출물 수출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에 니코틴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3거래처는 최근에도 인터넷을 통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판매하고 있다.

④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 의향을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 "우리는 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은 많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We can modify the instrument, and customers can avoid many duties)"고 회신하였다.

⑤ ○○ 내에서는 'stem'이 '잎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1)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1호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허가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군소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마4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관하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와 같이 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에서 이에 관한 제조 판매 등에 있어 규제를 두고 구 지방세법에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두고 있는 취지는 결국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서 기인한 것인 점, ② 과거 담배는 연초의 잎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특정한 것은 연초의 다른 부분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담배를 상정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③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되는 니코틴과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니코틴의 성분에 차이가 없다면 그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악영향 역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배의 정의에 관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초의 잎이 그 줄기와 뿌리와 함께 원료가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3거래처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4), 인보이스(갑 제7호증의7) 등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서는 이 사건 3니코틴에 관하여 'Nicotine from stem'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 내에서는 'stem'이 '잎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거래처는 ○○ 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 내에서 위와 같이 판매 권한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를 포함한 국내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3거래처가 중국 내에서 판매허가를 요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니코틴을 거래하였다면, 이 사건 3거래처가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도 니코틴이 추출 가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 자체가 낮으므로 추출에 있어 어려움이 쉽게 예상되며, 줄기나 뿌리는 분쇄 및 가공, 처리, 추출에 있어 잎보다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그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도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는 이른바 '폐기물'로 지칭되고 있다(갑 제11, 12호증). 게다가 연초의 잎이 주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 따라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에 대해서만 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연초의 줄기에서 잎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그 폐기물에는 소량의 잎이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3거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처가 연초 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초 잎의 일부가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1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인지, 줄기 또는 뿌리인지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게 되므로, 니코틴의 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할 상당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거래처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정한 서류를 제공하여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3거래처 역시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할 경우 국내 구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원료를 허위로 기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료가 아니고, 이 사건 3거래처가 연초 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구매전표(갑 제7호증의 6)상 공급업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과세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양○○

판사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별지1

목 록

순번	기간	세목	세액(원)
1	2016년 10월분	담배소비세	591,162,150
		지방교육세	228,606,980
2	2016년 11월분	담배소비세	741,149,070
		지방교육세	286,399,600
3	2016년 12월분	담배소비세	523,084,220
		지방교육세	201,974,570
4	2017년 1월분	담배소비세	1,040,129,480
		지방교육세	401,297,590
5	2017년 2월분	담배소비세	861,582,200
		지방교육세	332,169,490
6	2017년 3월분	담배소비세	784,605,860
		지방교육세	302,245,920
7	2017년 4월분	담배소비세	638,391,280
		지방교육세	245,711,610
8	2017년 5월분	담배소비세	760,727,710
		지방교육세	292,569,040
9	2017년 6월분	담배소비세	712,648,530
		지방교육세	273,853,930
10	2017년 7월분	담배소비세	709,892,940
		지방교육세	272,553,900
11	2017년 8월분	담배소비세	704,768,770
		지방교육세	270,359,440
12	2017년 9월분	담배소비세	907,773,670
		지방교육세	347,939,160
13	2017년 10월분	담배소비세	605,014,610
		지방교육세	231,688,920
14	2017년 11월분	담배소비세	811,959,140
		지방교육세	310,666,840
15	2017년 12월분	담배소비세	634,352,380
		지방교육세	242,476,260
16	2018년 1월분	담배소비세	755,733,640
		지방교육세	288,623,440
17	2018년 2월분	담배소비세	798,452,06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지방교육세	304,680,320
18	2018년 3월분	담배소비세	790,253,470
		지방교육세	301,266,030
19	2018년 4월분	담배소비세	825,163,130
		지방교육세	314,272,410
20	2018년 5월분	담배소비세	952,676,370
		지방교육세	362,495,460
21	2018년 6월분	담배소비세	697,067,370
		지방교육세	264,982,550
22	2018년 7월분	담배소비세	642,750,910
		지방교육세	244,090,550
23	2018년 8월분	담배소비세	732,050,450
		지방교육세	277,721,200
24	2018년 9월분	담배소비세	704,771,680
		지방교육세	267,088,750
25	2018년 10월분	담배소비세	1,035,537,080
		지방교육세	392,057,140
26	2018년 11월분	담배소비세	725,422,790
		지방교육세	274,366,450
27	2018년 12월분	담배소비세	859,247,170
		지방교육세	324,661,310
합 계			28,403,186,99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별지2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마. 제5종 전자담배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4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끝.